

—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제안 이유

○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과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

○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임대면적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의 추가로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○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 면제 신설 (안 제2조)

○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(안 제2조 및 안 제3조)

-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화물적재 면적이 2㎡미만인 승

용자동차(무쏘픽업,코란도밴 등)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

○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및 범위 확대 (안 제13조)

-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추가(취득세, 등록세,공동시설세)
-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5%감면 규정 신설

○ 지방의료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,등록세 감면 신설 (안 제5조의1)

○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추가 (안 제26조)

-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
-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
-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

□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도세감면대상의 확대 및 추가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안 제2조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의 취.등록세 면제,
- 안 제2~3조 「자동차 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화물적재 면적이 2㎡미만인 승용자동차(무쏘픽업, 코란도밴 등)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,
- 안 제13조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.등록세, 공동시설세 25% 감면 규정 신설,

- 안 제5조의1 지방의료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.등록세 감면 등입니다.
 - 아울러 안 제2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있는데 ▽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, ▽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, ▽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중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이 해당됩니다.
- 검토결과, 관련법령 제.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임무수행자,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,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이해관계인에게 세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.
- 다만, 도세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세수증감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, 추가 감면대상중 “특수임무수행자”의 정의가 다소 모호한데 선별기준은 무엇인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